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3.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 발의자: 홍복조의원 외 12인(안대국, 정창근, 김정윤, 윤권근, 김태형, 박왕규, 김화덕, 박정환, 이영빈, 배용식, 김기열, 이성순)
- 발의일자: 2019. 11. 8.
- 회부일자: 2019. 11. 21.
- 상정 및 의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19. 12. 3.)

2. 제정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궁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병역명문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안 제4조)
- 라.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5조)

4. 관계 법령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2조의2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박성우)

- 현재 정부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특히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양(宣揚)사업을 펼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마련·시행 중.
- 동 의안은 이러한 범국가적·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치고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문들에 대해 구 차원의 다양한 예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 조례안 각 규정을 살펴볼 때, 상기 중앙정부(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들 ‘병역명문가’(안 제2조)들이 구 시설물 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안 제5조)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예우 및 홍보(안 제4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해 특별히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관내 ‘병역명문가’로서 인정받은 ‘예우 대상자(안 제2조제2호)’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특히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된 여타 조례를 제·개정(안 제6조)” 조속히 마련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특이사항 없음”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